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김승수·박충권·김기현

김성원 · 윤상현 · 박성민

이인선 · 김석기 · 구자근

김상훈 · 강대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 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 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

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 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 14조 등).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수준을"을 "본인과 그 동거가족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에서 같다)의 생활수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지급액은 본인과 그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동거가족

은"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부양의무자에"를 "동거가족에"로, "부양의무자의"를 "동거가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동거가족이"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동거가족이"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부양의무자의"를 "동거가족의"로 한다.

제63조 전단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 본인과 그 동거가족(「주민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록법 :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에서 같다)의 생활수준을-----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 (3) ----------<u>지</u>급액은 본인 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 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 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과 생활조정수 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신 설>

-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 청) ① (생 략)
 -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 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③ ④ (생 략)
-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 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 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 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
	<u>야 한다</u> .
	④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
	청) ① (현행과 같음)
	②
	<u>동거가족은</u>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있다.

② · ③ (생 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 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 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지급 신청을 강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지급 신청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u>동</u>
<u> 거가족에</u>
<u>동거</u>
<u>가족의</u>
② · ③ (현행과 같음)
4
<u>동거가족이</u>
<u>.</u>
⑤ (현행과 같음)
③ (연광과 실름)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u>자가</u> 제14조의2제2 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 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5조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 신용정보 또는 보험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 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 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u>동</u>
<u> 거가족이</u>
②
<u>동거가족의</u>

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 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 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 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 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 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 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 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u>.</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양로지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
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
<u>다. 이하 같다)가 없는</u>